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7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박해철 · 임호선 · 강유정

박지원 · 김민석 · 김 윤

강경숙 · 남인순 · 이수진

임미애 · 최민희 · 채현일

강선우 · 김주영 · 홍기원

김재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법률 제 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10(시체 해부의 참관) ①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③ 제1항에 따른 참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제3호의3부터 제3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 해부를 영리적으로 이용한 자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9조를"을 "제9조제1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생 략)	해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u>된다.</u>		
<u><신 설></u>	제9조의10(시체 해부의 참관) ①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		
	은 학술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시체 해부를 실시하		
	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		
	<u>아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		
	과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u>한약사</u>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의료기사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3의2. ~ 3의7. (생략)

4. ~ 8. (생략)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
 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
 한 자

1의2. ~ 4. (생 략)

② (생 략)